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 협약·				일빈		!등급 , 보안[1
		동앙행정	기관명		 행경	성 안전 부		1 1	•	사업	 설명		: L J	, — 🗀	
			해당 시 작성)	ē		기술평가				내역/ (해당 /	나업명 니 작성)				
		공고병	번호						(해딩	개발 식팀 보시 작성) 발과제반					
		선정병	방식		책지정 모: 지] 정공모[]	· 품목공.	모[]	분야공	응모[]	자	유공되	2[]	
기술분류	국기	가과학기	술표준분류	1순	위 소분	류 코드명	! %	2순위 :	소분류	코드명	% 3순	위 소	분류	코드명	%
분류	분 류 재난안전과학기술분류					류 코드명	! %	2순위 :	소분류	코드명	% 3순	위 소	분류	코드명	%
	켤	통괄연구			국문										
(해당 시 작성)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	관연구기	개발기관		기관명	(0)					업자등록				
					<u>주소</u> 성민	(우)				F	법인등록 직위	면오			
연구책임자					<u></u> 장전화					<u>격표</u> 휴대전	하				
	리다먹다시			연릭		<u> </u>				코	<u> </u>		5		
				 전체			YY	YY. MI	M. DE) – YYY			_	개월)	
					1 7.11	1년차		YY. MI				DD(개월)	
연	[구개]	발기간	단계		1단계 r					Y. MM.	DD((년	개월)		
			(해당 시 작성)	nE	 단계	1년차									
						n년차		YY. MI) – YYY	Y. MM.	DD((년	개월)	
C	연구개	비바비	정부지원		부담			등의 지			합계			연구개	백비
	드 - * " 단위:		연구개발비		개발비	지방자치		기타						외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힙	 계		
	총														
1	단계	1년차													
-		<u>n년차</u> 1년차													
n	단계	<u> 1년시</u> n년차													
	공동		발기관 등 _{작성)}	기	관명	책임지	ŀ	직위	휴	대전화	전자우	편 _	역할	_ 비고 │기관위	유형
	공		개발기관											'-	
							_		_						
	위	탁연구:	개발기관												
	여그	.7 H -7	 관 외 기관												
	건구	/ 기 글 / 1 1	근 시 기단												
		연구개팀	발과제		성민						직위				
		실무담		연릭		장전화					내전화	_			
					` 선	자우편				국가연	구자번호	오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총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명을 기재합니다.
-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
-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 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 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 재합니다.
-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7	エコニこう	- VI-	비포 ㅋㅇ		니.											
	사업명								喜	흥괄연구기 (해당	개발 · 시 작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	발과제	베번호				
기 술	국가과학기 표준분투		1순위 -	소분류	루 코드	.명 %	2년	는위 스	·분류	루 코드명	%	3순위	소분	류 코.	드명	%
분류	재난안전과학 분류	학기술	1순위 -	소분류	를 코드	.명 %	2 ජ	는위 =	\ 분 루	루 코드명	%	3순위	소분	류 코.	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명														
진	선체 연구개발	기간														
	총 연구개발	비	(정부지							부담연구 , 그 외				천	원)	
	연구개발단	계				·[] 가 당되지 않]		슬성숙 ·시 조			├시점 로시점		
Ç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Ç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작성															
			최종 목표	L												
			전체 내용	용												
	연구개발	1단계	목:	Ⅱ												
목	뉴표 및 내용		'시 작성)	내	용											
			단계	목:	Ⅱ											
			근게 ·시 작성)	내는	용											
			구개 발성: 구개 발성:				기다	배효고	h]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구개월정· 구개발 -		기눌	기어エ」			기술	기여도(단	위: %)	1				
			기관명	연구개발 1년		연구/발종로 2년차	로 연	구개발 3년치		연구개발종로 4년 차	로 연	구개발종료 5년차		胆종료 연차		개발종료 년 차
			(XXXX													
	국문핵심어 (5개 이내)										•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 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
-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
-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ㅇ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 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기술료징수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중 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R&D성과 수익금액에 대한 기술기여도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 기술료 산정방식 : R&D성과 수익금액 X <mark>기술기여도</mark> X 비율(중소기업5%, 중견기업10%, 대기업·공기업 20%)
 - **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 :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 해당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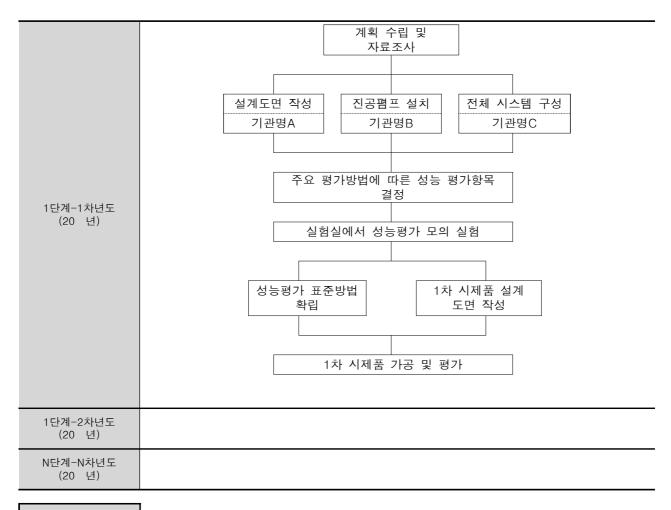
< 본문 1 >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 내용 및 수준을 기재
 - ※ 개발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한 목표달성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0

_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표가 아닌 별도 이미지로 작성 가능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기술개발 추진 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 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 방법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연구개발	기술기여도(단위: %)						
기관명	연구배종료 1년차	연구개발 종료 2년 차	연구개발 종료 3년 차	연구개발 종료4 년 차	연구개발 종료 5년 차	연구개발 종료 6년 차	연구배종료 7년차
XXXXX							
XXXXX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 1) 국내외 시장 동향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3) 표준화 전략
- 4) 사업화 계획(해당시 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과제의 경우 필수작성)
- (1) 사업화 전략
- (2) 투자 계획
- (3) 생산 계획
-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 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받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받아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 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 (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개신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43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A 크레비크레터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연구자	(신성/구행웅/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신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개신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77 67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책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уу			

바. 지식재신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개신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직장	부서	휴대전화
77 67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성정기관 세 표 사 어머니 어그게 바고 됐 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역할:	비고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참여한 기간)	연구색임자/ 연구자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уу			
•			уу			

바. 지식재신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уу
			уу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SLO	ol ol x	47		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참여	연도		_
성명 국적	소속	직위	국가 연구자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구분	근무 구분	1단계		n단계		총 참여기간	
		기관		번호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012	(해당 시 작성)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시간 선택제	지원		연도		
성명	국적	소속	직위				담당역할	구분	근무 구분	1단계		n단계		총 지원기간
		기관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0 12	(해당 시 작성)	(해당 시 작성)	1년	n년	1년	n년	(개월)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성명	국문		- 국적	
	88	영문		1 44	
책임자	기	 관명		전화번호	
	부	^L 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국	l문			
ΑΙ 🗆	영	!문			
실무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리하시	부	¹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서머	국문		국적	
	성명	영문		국식 국식	
책임자	기	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국문				
실무	형	!문			
글ㅜ 담당자	기	관명		전화번호	
064	부	·서		휴대전화	
	즈	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기업만 작성)

※ 국가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보유특허 실적, 과제와 직접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과제 종료 후 5년이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과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최근 5년 내 창출 시 작성 필요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중앙행정기관	비고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참여기간)	수행내용	(전문기관)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사업화	지역 ^{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기술
한 기계 관계 현 경	방식 ^{1」}	형태 ^{2」}	^ ¬	시티되어	410	14416	국내	국외	연도	수명

- * 1」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 · 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 •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С	배표자 성명/국적		
4	(대학, 정	기관 유형 부출연연, 중소기	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yyyy년	
11	부채 ㅂ (최근 3년 간		yyyy년	
	(*12 32 2		yyyy년	
			yyyy년	
12	유동 ㅂ (최근 3년 간		yyyy년	
	(*12 32 2		yyyy년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4.0	자본잠식 현황		yyyy년	
13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싱 (최근 3년 간		yyyy년	
	() = 3 = 2	,	yyyy년	
			yyyy년	
15	영업 0 (최근 3년 간		yyyy년	
	() = 3 = 2	,	yyyy년	
			성명	
	연구개발	기관의	부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직위	
16	(<u>※</u> 대학의 경우	사한혀려다이	직장전화	
	연구개발과제 지원		휴대전화	
	표지의 "실무담당	당자"와 다름)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터	<u>+</u>		그 외	기관	등의 지	원금		- 합계		
	丁正	정부지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	지방자치단체			フ	[타()		합 계	
단 계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1													
n	n													
	소계													
	총계													

* 1」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기	ㅐ발비							\	
							직접비									연구	연구
연구개발:	기과며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법		연구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외	수당 계상
근 기 글		인건비	일반 ¹ ,	특례 ²	일반 ³ 」	특례 ⁴	재료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환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₅	기준 금액 ⁶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	
총계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징에 따른 연구시설 징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 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시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 (• 연변/				
							연	구개별	할비								
						직:	접비									연구	연구
연차		학생인건비			년구시설·장비 비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개발비	연ㅜ 수당 계상	
<u>.</u>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연구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00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₃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١.	처원)
1717		211717

							연	구개빝	<u></u> 날비							(= 1)	. 22)
						직:	접비									α¬	α \neg
연호	ŀ		학생인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위탁	국제	연구	연구					연구 개발비 외	연구 수당 계상
연시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연구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공동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_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

(단위: 천원)

														· 건년/			
							연	구개빌	타비								
						직	절비									연구	연구
연차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위탁	국제 공동	연구	연구	여구				개발비	선 수당 계상	
	•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01 7	개발 부담 비	하나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5」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	
	소계															-	
	현금																
총계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

(단위: 천원)

													(단위	· 선권)			
							연	구개빌	할비								
						직?	접비									연구	연구
연차		학생인	인건비	연구시설 • 장비 비		연구	위탁	국제 고도	연구	연구					개발비외	연ㅜ 수당 계상	
2^	ı	인건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재료 비	연구 개발 비	공동 연구 개발 비	개발 부담 비	환동 비	연구 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지원금 ⁵ J	기준 금액 ⁶
	현금																
1	현물																
	소계																
	현금																
n	현물																
	소계																
	현금																
총계	현물																
	합계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 • 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활용계획

(단위: 천원)

		기존/신규			비용		전담인력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본/전표 구분	운영기간	연간운영	과제반영	현금/현물	선담한덕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下正		비용	비용	구분 ^{1」}			
			уу-уу						
			уу-уу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총괄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경가 항목 ·요성능 ¹ 」)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빌	목표 설정 근거	
(丁五公司 -)		(%)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u> </u>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I.	2)
2	1)
۷.	2)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 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 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 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 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 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표시합니다.
 -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총괄기관에서 인정하는 성과지표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정의
논문	평균 mrnIF 지수(SCI(E)급)★	기존 영향력 지수(IF)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순위보정영량력 지수'(100점 만점) 단, mrnIF 지수 30점 미만은 불인정
	평균 IF 지수(등재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개한 IF지수로 국내 KCI만 해당 단, IF지수 0.4점 미만은 불인정
	특허 출원 건수	신규 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원서를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한 건
	특허 등록 건수	특허 출원 후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독점 권을 부여 받은 건
특허	K-PEG 지수★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평가시스템을 통해 부여된 점수 (300 만점)
	 3극 특허(미국, 유럽, 일본)★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출원된 특허
	0 1 ¬¬(¬¬¬, па, ≥с/ х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등록된 특허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건
소프트	소프트웨어 활용도★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횟수 또는 판매·계약건수 및 금액 ※ 다운로드 횟수는 무상배포의 경우에 한함
웨어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소프트웨어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를 정량화(100점 만점) ※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100인 이상 실시
	기술지원 건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된 S/W을 적용·지원한 건 ※ 실제 적용·지원받은 기관의 확인서 제출
표준화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표준화 지원, 인증·시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 활동 건 및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학술전문 협회 등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제정된 실적
	표준화 지원 가치★	표준화 지원, 인증·시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 활동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매출액 상승 등에 기여한 가치
보고서 원문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기술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신제품의 실용화 및 상용화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제작한 시제품 출시 실적
시제품	시제품 현장 활용도★	기술개발 제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실적 단, 테스트베드 운영 실적은 불인정
	상품 출시	해당 시제품을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실제 매출액(2천만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개발 건수	재난안전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개 발 건
전산 시스템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스템의 활용도 또는 서비스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화 (100점 만점) ※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100인 이상 실시 재난안전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정보DB
	DB 구축 건수	가
기술실시	기술 실시(이전) 건수	유·무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타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이 전한 것
(이전)	기술료(경상)★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 술료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정의
기타 지식 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의 출원·등록건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 출원·등록 건 (상표) 자타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 또는 색 재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출원·등록 건
사업화	창업 건수	창업 업체수로 본 과제 연구성과를 활용한 경우에 한함
	매출액 또는 계약액★	시장 판매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액 또는 신기술 적용을 통해 발생된 원가절감액 등
인력양성	박사학위자 수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성과는 학위취득일 기준이며, 수료자는 불 인정
	석사학위자 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성과는 학위취득일 기준이며, 수료자는 불 인정
	신규인력 채용★	사업 수행기간 동안 채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자 단, 과제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
정책 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연구결과가 정책에 제안, 반영되었거나 정책을 지원한 경우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 각종 사업계획, 정책 채택을 확인할 수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있는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건
	정책지원 건수	성과물의 중앙 및 부처, 지자체 정책 및 현장업무 활용사례 및 워 크숍·심포지엄 개최 및 공청회 실시 건수
공공교육	공공교육 개최 건수	공익 목적으로 국민/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한 경우(회당 20인 이상)
	공공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교육 만족도를 정량화(100점 만점) ※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100인 이상 실시
훈련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익 목적으로 국민/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토 대로 교육한 경우, 해당 교육 수료자 수(회당 20인 이상)
	교육훈련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훈련 만족도를 정량화(100점 만점) ※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100인 이상 실시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공익의 목적으로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리플렛, 홍보책자 등의 간행물을 발간한 건 및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학회지, 뉴스레터, 저널등 정보·소식지 성격의 간행물에 기고한 건
	홍보 전시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한 홍보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과제 연구자가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국내외 학회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수상 받은 건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과제 연구자의 탁월한 업적이나 우수한 성과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 상 받은 건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연구내용과 관련한 국제행사를 개최한 건 ※ 국외전문가 3인이상 또는 2개국 이상 참여한 건
	해외 연구자 유치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해외 국가연구기관개별연구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해외 연구자 유치(해당과제 수행 연구자) 인력 수 ※연구참여자인 외국학생은 해외 연구자 유치에 해당하지 않음

★ 성과지표는 질적지표를 나타내며, 성과지표 설정시 질적지표를 50%이상 설정